

## 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
□ 2003년 5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○ 먼저 이 조례안이 제정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면,

2002년 11월 12일 우리위원회소속 김문천의원의 소개로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공동대표(노영우, 김범추, 곽동철)로부터 청원이 제기되어 제207회 임시회 제2차교육사회위원회(2002.12.4)에 상정 심도있는 심사결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정토록 의결한 사항입니다.

○ 이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

- 도청 및 직속기관, 사업소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, 노인 및 모자가정에 대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을 허가토록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.

○ 주요골자로는

-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,
- 우선허가를 받고자 하는 대상 및 순위는 1)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0세이상 장애인세대주와, 2)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이상의 노인, 3)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순으로 하며
-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과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는 것입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먼저 동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계약체결 기간을 3년으로 하였는데 제6조의 사업자의 외부, 제7조의 계약해지 등의 사유를 감시 감독하고 검증하기 수월하도록 계약체결 기간을 1년 또는 2년 이내로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으며

○ 동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는 대리인 규정이 모호하여 자칫 실제 부양하지도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운영권을 행사하고 실제 장애인 등은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 직계존비속 앞의 “및”을 “와”로 수정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

○ 안 제7조에서는 사전허가 없이 전매 또는 양도한 자가 향후 허가를 재 신청할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바,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,

\*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로부터 향후 ○년간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. (경기도 2년, 인천광역시 3년)

○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 사항을 분리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\*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\*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며, 그 계약기간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□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